

『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5년 12월 14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5년 12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05년 12월 22일

제10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설계의 타당성,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설계자문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함 (안 제2조)
- 설계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함 (안 제3조)
 - 30억이상 건설공사는 시장의 요청에 의거 자문을 받아 사업시행

- . 관계부서에서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설계자문 요청서와 설계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함 (안 제7조)
- . 위원장은 위원 및 전문가에게 설계내용을 사전심의 요청하고 심의를 요청받은 위원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함 (안 제9조)
- . 위원회는 자문요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처리 하도록 함 (안 제12조)

라 참고사항

-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시행령
-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황 창 수

- 본 제정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설계의 타당성,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서
- 이안은 주민과의 이해관계와 전혀 관련이 없는 행정 내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현재까지는 100억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함에 따라 장기간 심의 및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심의 등 불합리한 점이 많이 도출되었으므로 구미시설계심의위원회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각종 건설 공사 시 원활한 추진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